

The First & the Best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일반대학원

석사/박사과정 개설 및 입학 안내

◆ 소방안전공학과 소개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필요한 화재안전, 전기안전, 위험물안전, 제품안전, 가스안전, 산업안전, 폭발안전, 사고조사 등 소방안전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교육·연구한다.

1) 전공 및 연구 분야(학위명 : 소방안전공학 석사/박사)

- 화재안전 및 건축방재
- 전기안전 및 제품안전
- 산업안전 및 폭발안전
- 사고조사 및 소방행정

2) 전공교수진

성명	최종학위	전공분야	최종학교	연구분야
이 의 평	공학박사	안전공학	요코하마국립대학	사고조사, 제품안전, 건축방재, 소방행정
최 총 석	공학박사	전기공학	인하대학교	전기안전, 사고조사, 제품안전, 화재안전
권 경 옥	공학박사	위험물안전	동경이과대학	산업안전, 폭발안전, 사고조사, 화재안전
2009년 3월 초빙	공학박사	화재역학	-	화재역학, 화재안전, 건축방재, 소화설비
2010년 3월 초빙	공학박사	폭발안전	-	폭발안전, 산업안전, 정전기안전, 화재안전
2009년 3월 초빙	공학박사	건축방재	-	동경대학 화재전공 퇴직교수 영입 교섭 중

※ 전주대학교 컴퓨터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경영학, 법학 분야 등 5 명의 교수진이 참여하고 있음

3) 학과개설 : 2009년 3월 석·박사과정(일반대학원) 동시 개설

◆ 소방안전공학과 석박사과정 특징

- 전국 최고의 연구실적과 확실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전공교수진을 갖추고 있어 소방공무원 등 직장인에게 실무와 이론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음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커리큘럼 운영
 - 관심 있는 분야 또는 재직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교과목 이수만으로 학위취득이 가능함
 - ※ 예로 화재조사를 전공하는 경우, 화재조사관련 교과목만을 수강하여 학위취득이 가능함

- 전기안전, 제품안전, 사고조사 등 전국의 어느 대학교에서도 개설하지 못한 차별화된 전공분야를 개설함
- 소방공무원과 전기안전공사, 전력공사, 가스안전공사, 소방검정공사, 소방안전협회, 화재보험협회,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공기업의 직원, 대형시설물 또는 산업체의 안전관리자 등 직원, 가전제품 또는 차량 메이커 등 대기업의 제품안전관련 직원, 소방서와 경찰서 및 보험회사와 손해사정회사의 사고조사 직원 등 전문지식에 대한 욕구가 높은 이러한 분야의 분들이 입학하여 실무관련 전문지식을 배울 수 있음
-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말수업 등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 연구 실적(논문) 중심의 실질적 전문성에 비중을 두고 지도함
 - 수업은 주중 또는 월 1회 주말(토요일 전일, 일요일 오전) 수업 및 발표 등을 선택하여 수강 가능
 - 격주단위로 리포트 제출 등
- 명쾌한 학위수여 기준 제시
박사과정 : 국내저널 3편(또는 외국저널 1편 + 국내저널 1편) 이상
- 상기와 같은 이유로 전국단위의 모집이 가능한바 전국대학의 석박사과정 소방안전공학과를 선도할 수 있음

◆ 입학시험

○ 특별전형

서류심사와 면접에 의하여 선발하며 지원 자격은 대학원학칙에 의하여 대학원 입학자격이 인정된 자로 한다. 단, 소방(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간부(소방위 또는 경위 이상)로 한다.

※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12조 참조

○ 일반전형

일반전형의 고사과목은 응시자의 출신학부 전공 등을 고려하여 1-2개 과목을 선정하여 전형을 실시한다.

◆ 이수학점

○ 석사과정 : 총 24학점 이상

- 공통과목: 3과목 9학점 이상
- 주전공과목: 3과목 9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 2과목 6학점 이내
- 논문지도: 2학기(pass)

○ 박사과정 : 총 36학점 이상

- 공통과목: 4과목 12학점 이상
- 주전공과목: 8과목 24학점 이상
- 부전공과목: 3과목 9학점 이내
- 논문지도: 2학기 이상(pass)

◆ 학위논문 제출자격 시험

- 어학시험 : 대학원학칙에 준한다.
- 종합시험 : 대학원학칙에 준한다.

◆ 논문지도와 논문 제출 절차

- 석·박사과정의 지도교수는 입학 후 1개월 이내에 학생의 신청에 의하여 선임한다. 다만, 학생이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학과 운영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전공분야 소속 학회에 연구내용을 반드시 발표(심사논문에 한함)하게 한다.
단, 학회에 발표해야 할 논문의 수 등은 아래와 같다.
 - 석사과정 : 1편 이상
 - **박사과정 : 국내저널 3편(또는 외국저널 1편 + 국내저널 1편) 이상**
 - ※ 구두발표는 제외하며, 학위논문과 관련이 있어야 하며 제1저자를 원칙으로 하며, 재학 중에 발표된 논문에 한함

◆ 교과목

○ 전공 및 연구 분야

화재안전 및 건축방재 전공
전기안전 및 제품안전 전공
사고조사 및 소방행정 전공
산업안전 및 폭발안전 전공

○ 공통과목

<석사과정>

소방행정특론 I, 방화공학특론 I, 소화설비공학특론 I, 경보설비공학특론 I,
위기관리특론 I, 소방안전법규특론 I, 논문지도 I

<박사과정>

소방행정특론 II, 방화공학특론 II, 소화설비공학특론 II, 경보설비공학특론 II,
위기관리특론 II, 소방안전법규특론 II, 논문지도 II, 논문지도 III

○ 화재안전 및 건축방재 전공

<석사과정>

화재역학특론 I, 건축방재공학특론 I, 화재와 건축 I, 연소공학특론 I, 열전달특론 I, 유체역학특론 I, 제연공학특론 I, 화재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I,
화재위험성평가특론 I, 건축방화관계법규 I, 피난공학 I, 화재사례연구 I

<박사과정>

화재역학특론 II, 건축방재공학특론 II, 화재와 건축 II, 연소공학특론 II, 열전달특론 II, 유체역학특론, 제연공학특론 II, 화재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II, .
화재위험성평가특론 II, 건축방화관계법규 II, 소방시설설계특론, 소방시설감리특론, 피난공학특론 II, 화재사례연구 II, 화재안전 및 건축방재 세미나 I, 화재안전 및 건축방재 세미나 II

○ 전기안전 및 제품안전 전공

<석사과정>

전기안전공학특론 I, 제품안전진단특론 I, 제품안전설계특론 I, 전기화재공학특론 I, 신뢰성공학 I, 전기설비안전공학 I, 전기설비진단 I, 정전기공학

Ⅰ, 작업환경공학Ⅰ, 조명 및 전열 진단Ⅰ, 안전설비 점검 및 검사Ⅰ, 과학과 에너지Ⅰ, 소방전기설비특론Ⅰ, 안전관리의 심리Ⅰ, 전기에너지변환특론Ⅰ, 전기안전사고사례연구Ⅰ

<박사과정>

전기안전공학특론Ⅱ, 제품안전진단특론Ⅱ, 제품안전설계특론Ⅱ, 전기화재공학특론Ⅱ, 신뢰성공학Ⅱ, 전기설비안전공학Ⅱ, 전기설비진단Ⅱ, 정전기공학Ⅱ, 작업환경공학Ⅱ, 조명 및 전열 진단Ⅱ, 안전설비 점검 및 검사Ⅱ, 과학과 에너지Ⅱ, 소방전기설비특론Ⅱ, 안전관리의 심리Ⅱ, 전기에너지변환특론Ⅱ, 전기안전사고사례연구Ⅱ, 전기안전 및 제품안전 세미나Ⅰ, 전기안전 및 제품안전 세미나Ⅱ

○ 사고조사 및 소방행정 전공

<석사과정>

발화개소판정Ⅰ, 화재패턴분석Ⅰ, 발화원판정Ⅰ, 전기화재조사Ⅰ, 차량화재조사Ⅰ, 방화화재조사Ⅰ, 제품사고조사Ⅰ, 화학화재조사Ⅰ, 폭발사고조사Ⅰ, 미소화원조사Ⅰ, 사고사례연구Ⅰ, 기계사고조사Ⅰ, 전기안전사고조사Ⅰ, 산업안전사고조사Ⅰ, 교통사고조사Ⅰ, 가스사고조사Ⅰ, 화재와 보험Ⅰ, 소방관계법규특론Ⅰ, 소방행정학특론Ⅰ, 소방조직관리론Ⅰ, 재난관리론Ⅰ, 안전관리론, 소방행정통계분석Ⅰ, 비교소방행정론연구Ⅰ

<박사과정>

사고조사절차, 사고조사관련 법규, 발화개소판정, 화재패턴분석Ⅱ, 발화원판정Ⅱ, 전기화재조사Ⅱ, 차량화재조사Ⅱ, 방화화재조사Ⅱ, 제품사고조사Ⅱ, 화학화재조사Ⅱ, 폭발사고조사Ⅱ, 미소화원조사Ⅱ, 사고사례연구Ⅱ, 기계사고조사Ⅱ, 전기안전사고조사Ⅱ, 산업안전사고조사Ⅱ, 교통사고조사Ⅱ, 가스사고조사Ⅱ, 화재와 보험Ⅱ, 소방관계법규특론Ⅱ, 소방행정학특론Ⅱ, 소방조직관리론Ⅱ, 소방행정이론세미나, 소방조직이론세미나, 소방인사행정론세미나, 재난관리론Ⅱ, 안전관리론Ⅱ, 소방행정통계분석Ⅱ, 비교소방행정론연구Ⅱ, 사고조사 및 소방행정 세미나Ⅰ, 사고조사 및 소방행정 세미나Ⅱ

○ 산업안전 및 폭발안전 전공

<석사과정>

위험물질공학특론Ⅰ, 위험물성능기술법규 및 기술특론Ⅰ, 위험물시설공학특론

Ⅰ, 위험물소방시설점검 및 설계감리특론Ⅰ, 소화약제 화학특론Ⅰ, 산업안전 화재 위험성평가특론Ⅰ, 방화방폭공학특론Ⅰ, 산업재난관리특론Ⅰ, 가스 폭발안전공학특론Ⅰ, 폭발모델링및시뮬레이션특론Ⅰ, 소방기기산업안전공학특론Ⅰ, 반도체산업안전공학특론Ⅰ, 석유화학산업안전공학특론Ⅰ, 자동차산업안전공학특론Ⅰ, 조선산업안전공학특론Ⅰ, 건설산업안전공학특론Ⅰ, 제지산업안전공학특론Ⅰ

<박사과정>

위험물질공학특론Ⅱ, 위험물성능기술법규 및 기술특론Ⅱ, 위험물시설공학특론Ⅱ, 위험물소방시설점검 및 설계감리특론Ⅱ, 소화약제 화학특론Ⅱ, 산업안전 화재 위험성평가특론Ⅱ, 방화방폭공학특론Ⅱ, 산업재난관리특론Ⅱ, 가스 폭발안전공학특론Ⅱ, 폭발모델링및시뮬레이션특론Ⅱ, 소방기기산업안전공학특론Ⅱ, 반도체산업안전공학특론Ⅱ, 석유화학산업안전공학특론Ⅱ, 자동차산업안전공학특론Ⅱ, 조선산업안전공학특론Ⅱ, 건설산업안전공학특론Ⅱ, 제지산업안전공학특론Ⅱ, 산업안전 및 폭발안전 세미나Ⅰ, 산업안전 및 폭발안전 세미나Ⅱ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제 2장 입 학

제5조(지원 구비서류) 각 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기일 내에 다음의 서류를 대학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및 석·박사 통합 학위과정
 - 가. 입학원서(소정양식)
 - 나. 대학원 학과주임교수 추천서(원서이면) : 일반대학원에 한함
 - 다. 대학졸업(예정)증명서 또는 학력인정서 1부
 - 라. 출신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
 - 마.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력서 각 1부(특별전형자에 한함)
 - 바. 소정의 전형료
 - 사. 자기소개서 1부(특별전형에 한함) : 일반대학원에 한함
 - 아. 대학원 재학 중 연구계획서 1부(특별전형에 한함) : 일반대학원에 한함
 - 자. 국외 학사출신자는 일체의 서류를 한글로 번역한 공증서 1부
 - 차. 주민등록 초본(해당자에 한함)

제7조(일반전형 방법) ① 일반대학원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1. 필답시험
 - 가. 전공과목 : 전공분야의 기본지식 및 판단력을 시험한다.
단, 예능계는 이론 및 전공실기능력을 평가한다.
2. 서류전형 : 대학성적, 전공수학능력, 종사하는 분야와 전공과의 관련, 지역사회 공헌정도, 수학 이후의 예상공헌도 등 5개 문항으로 전형한다.
3. 면접시험
 - 가. 지원자의 대학 및 대학원 재학시의 성적과 전공에 대한 지식과 능력, 적성, 동기, 인격, 의사표현력에 대하여 심사한다.
 - 나. 면접시험의 평점은 판정란에 A, B, C, D로 표시하며, 수학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는 D로 판정한다.
 - 다. 응시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면접고사에 불응한 경우에는 입학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한다.

② 특수 대학원 일반전형 시험과목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만 실시한다. 다만, 필기시험이 필요로 한 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제11조(특별전형) 국내·외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는 학사 또는 석사학위를 받은 자(예정자 포함) 중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특별전형 지원자는 필답시험을 면제하고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으로 합격여부를 사정한다. 단, 예능계열은 이론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제12조(특별전형지원자격) ①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석사학위과정

- 가. 국내 · 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취득예정자로 학부평균성적이 3.0/4.5 이상인 자
- 나.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교원, 교육경력 5년 이상인 자
- 다. 국 · 공립연구소 연구원
- 라.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 마. 전문직종 종사자(의사, 판사,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등 동등한 자격증 소지자
- 바. 전공분야 기사자격증 소지자
- 사. 기초시 · 군의원, 광역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아. 공기업 또는 상장기업 과장급 이상인 자
- 자.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2. 박사학위과정

- 가. 학부 평균성적이 3.5/4.5 이상이고,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이 4.0/4.5 이상인 자
- 나. 대학(전문대학 포함) 전임교원,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 다. 전문직종 종사자(의사, 판사, 변호사, 기술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변리사) 등 동등한 자격증 소지자
- 라. 국 · 공립연구소, 이에 준하는 책임연구원 이상인 자
- 마. 기초시 · 군의원, 광역의원, 시 · 도교육의원, 지방자치단체장
- 바. 사무관급 이상 공무원
- 사. 공기업 또는 상장기업 과장급 이상인 자
- 아. 위의 각 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서 대학원위원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

3. 석 · 박사 통합 학위과정

- 가. 대학 전학년 성적이 평균평점 3.5 이상(졸업예정자는 4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으로 TOEFL(500점), TOEIC(600점), CBT(230점) 이상인자
- 나. 최근 3년 이내의 TOEFL(550점 이상), TOEIC(700점 이상), CBT(240점 이상) 성적이 우수한 자로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② 특수대학원 학위과정의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제 4조 제1호를 적용한다.

제 14조(특별전형방법 및 기준) ① 각 학위과정의 특별전형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 서류 심사는 본 세칙 제 5조의 지원 구비서류를 근거로 하여 특별전형 배점기준표에 의거 심사한다.

③ 면접시험은 필답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객관적 선별력과 판별력을 심사하며 전공에 대한 지식과 학문에 대한 열정 및 진지성 그리고 전공에 대한 적성, 인간성과 도덕성 등을 판별하여 심사한다.

④ 예능계열은 이론 및 실기시험을 실시한다.

제 15조(특별전형 시험위원) 총장이 각 학과의 강의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학원 특성에 따라 1~2인을 시험위원으로 위촉한다.

제16조(특별전형 배점 및 합격기준) ① 특별전형의 배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 : 100점 만점
 2. 면접시험 : 100점 만점
 3. 실기시험 : 100점 만점(예능계에 한함, 단, 이론전공은 학과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 ②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예능계 한함)은 총장이 위촉하는 심사위원 1~2인이 개별적·비공개적으로 종합평가하여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취득한 자를 합격으로 한다.

제 5 장 자격시험

제 1 절 외국어 시험

제65조(응시자격) 외국어시험 응시자격은 일반대학원은 정규등록을 2학기(특수대학원은 3학기) 이상 필한 자. 단, 제1외국어시험 응시자격 해당자 중 각 학위과정 공히 토플시험 550점 이상인 자에게는 제1외국어 시험을 면제한다.

제69조(출제범위) ① 제1외국어는 원생의 전공영역과 관계가 있는 외국어 독해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평가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제70조(시험기간) 교과목당 50분내에 풀 수 있는 내용으로 한다.

제 2 절 종합 시험

제74조(응시자격)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 취득하고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평균성적이 3.0 이상이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2.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취득하고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 평균성적이 3.0이상이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3. 석·박사 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평균성적이 3.0이상으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단, 석사학위만을 이수하고자 할 때에는 석사학위 과정의 응시자격만을 적용한다.
4. 취득학점은 수료학점(공통, 전공선수 과목)을 구분하여 취득하여야 한다.